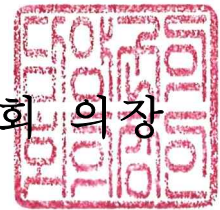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정책연구용역의 시행, 연구활동 수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의원 전문성 향상과 의회 정책역량 강
화를 통해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나. 연구활동의 범위 및 예산지원(안 제3, 4조)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라.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안 제6조)

마.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활동비 신청(안 제8, 9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관리(안 제10, 1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1. 27.(8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 건 서		
1. 조례안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2. 의 건	관련조문	의 건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담양군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시 필요경비

③ 의장은 정책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제3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연구활동 개시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표의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명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해체) 신청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단체의 의원변경(해체)을(를) 신청합니다.

단 체 명		
대표의원		
변동의원	당 초	의원 (서명 또는 인)
	변 경	의원 (서명 또는 인)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대표의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기 타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구주체 변경내용	당 초	연구주체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체	
		연구목적	
연구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
다.

단 체 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특기사항		

붙임서류 1. 〇〇〇〇년도 〇〇〇〇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